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9.(월) 10:00

개인정보위,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유의사항 당부

- 스마트 글래스 특징 및 개인정보 위협요인 등에 관한 분석 보고서 발간
- 연내 제조사·서비스 제공사 준수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입 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비롯 사생활 침해** 등 **스마트 글래스** 관련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스마트 글래스의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당부**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새로운 서비스**나 **신기술 출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 실제 **스마트 글래스**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이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 출시 전 관련 기업**과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특성 및 기종별 특징**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요 특징 및 위협요인 등**을 **소개**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분석한 스마트 글래스 심층 보고서('26.11월)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마이크·센서 등 **정보 수집 장치**를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동**되어 착용자의 시청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이다. 해당 기기는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인칭 시점**의 영상과 음성 등의 데이터를 스마트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로 연계·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몰입감·편의성** 등에 강점이 있으며, 향후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5년 글로벌 출하량은 870만 대 규모로 전년 대비 322% 증가(출처: Omdia)
'26년 30억 5천만달러에서 '32년 105억 8천만 달러로 관련 시장 연평균 22.88% 성장 전망(출처: 360iResearch)

구체적으로 **스마트 글래스**는 **일반 안경**이나 **선글래스와 외형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다른 촬영 기기들과는 달리 **별도의 촬영 동작을 요구하지 않아 촬영 또는 녹음 여부**를 **알아보기 어렵다.** 각 제조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엘이디(LED) 표시등과 같은 **촬영 표시장치**를 두고 있지만 주변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용자가 표시장치를 가리는 등 **무력화**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기종**도 있다는 점 역시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렇게 촬영되어 수집되는 영상·음성 등 정보는 글래스 기기뿐 아니라 스마트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 등 **다양한 기기·사업자를 통해 처리**될 수 있다. 특히, 제조사에 따라 자회사의 인공지능 모델이 아닌 **외부 모델을 이용**할 수 있고, 연계되는 앱·서비스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구조**가 **다른 기기**에 비해 **복잡한 측면**이 있다.

한편, 스마트 글래스는 **주로 착용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므로, 촬영 대상은 이용자 본인이 아니라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주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등의 정보**가 인공지능 학습이나 에스앤에스(SNS) 등 **서비스와 연계**될 경우 **침해 소지가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

< 스마트 글래스 서비스 연동 구조 >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특히 **이용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먼저 스마트 글래스 초기 설정 및 서비스 이용 전 기기 또는 앱·서비스 별로 **어떤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기능**은 **비활성화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주변에서 **스마트 글래스 착용 및 이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만큼 **누구에게나 촬영이 금지**된 화장실, 탈의실 등의 장소(「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를 포함하여, 법원이나 시험장 등 **촬영이 금지·제한**되는 장소에서는 스마트 글래스 **이용을 자제**하거나 **가능한 경우**라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무분별한 촬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무단 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의사에 반하는 신체 등 촬영), 「정보통신망법」(SNS 게재 등을 통한 권리침해), 「통신비밀보호법」(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 녹음), 개별 시험 관련 법령(부정행위) 등으로 규율될 수 있음

또한 촬영 시에도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리 촬영**이나 **대화가 녹음**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촬영·녹음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촬영·녹음 등에 거부**하면 **중단**하여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흐름**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특히 **인공지능 학습 등**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처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조사 역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관점**에서 **주변에서 촬영·녹음 사실 등 기기 운용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제조**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글래스는 **새로운 폼팩터(Form Factor)**로서 관련 기술·기능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용자·제조사·서비스 제공사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 글래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를 비롯 관계 부처와도 지속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 피지컬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스마트 글래스**가 **국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단계**이다"라며, "**개인정보위**는 스마트 글래스 등 **신기술에 대응**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며 **혁신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책임자	과 장	신용우 (02-2100-3061)
		담당자	사무관	김영훈 (02-2100-3063)
담당 부서	예방조정심의관 사전실태점검과	책임자	과 장	김해숙 (02-2100-3060)
		담당자	주무관	김선화 (02-2100-2485)

붙임 **스마트 글래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마트 글래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개인적 목적의 촬영도 주변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이용
- 스마트 글래스는 촬영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이용 사실을 먼저 알리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이용을 중단
- 촬영된 영상·음성이 AI 학습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관련 설정을 확인하고 본인·타인의 민감한 정보가 입력되지 않게 주의
- 병원, 학교, 시험 장소 등 촬영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장소에서는 시설의 이용 안내를 확인하고 준수

참고 : 촬영 시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령

※ 다음의 법령은 촬영·녹음 시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사례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구분	법령	적용 상황
업무 목적 촬영	「개인정보 보호법」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 누구든지 화장실, 탈의실 등의 장소에서는 촬영 금지
초상권	「민법」	동의 없이 영상 등을 촬영·게시하여 타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성적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온라인 게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대화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부정 행위	「고등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시험 중 스마트 글래스를 통하여 타인과 소통하거나 AI를 통해 답안을 도출하는 경우
기업 내 촬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 비밀을 몰래 촬영·유출하는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 기술을 몰래 촬영·유출하는 경우
군사·보안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 기지 또는 시설을 승인 없이 촬영하는 경우
법원 내 촬영	「법원조직법」	재판장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경우